

대구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2039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36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203923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합자회사 A

2. B

3. C

4. D

5. 주식회사 휴먼

변론종결 2016. 3. 9. (피고 1. 내지 3. 및 5.에 대하여)

2016. 5. 11. (피고 4.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6. 10.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302,246원 및 그 중 258,995,464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1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휴먼 사이에 2015. 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다. 대구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의 배당금 50,000,000원과 피고 주식회사 휴먼의 배당금 576,014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576,014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A'로 줄여 씀),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302,246원 및 그 중 258,995,464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0.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주)대구은행에 제출하여 3억원을 대출받았다.

① 보증번호: G

② 보증금액: 금 255,000,000원

③ 보증기한: 2010. 3. 30.부터 2011. 3. 29.까지 (이후, 2015. 3. 27.로 변경됨)

나. 위 신용보증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B와 C은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서 생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다. 피고 A의 이자 상환 지체로 2015. 1.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5. 29. (주)대구은행에 258,995,464원(원금 255,000,000원 + 이자 3,995,4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 등의 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A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1,657,062원을 지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 649,72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대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000만 원인 4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외 2014. 12. 30. 피고 D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4. 12. 26.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 23.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5. 1. 23.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마. 피고 D 및 (주)대구은행의 신청으로 중복 개시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E, F(중복))에서 이 사건 계속 중인 2015. 9.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은 2015. 11. 19.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00,576,014원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억 5,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휴먼에 576,0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D과 (주)휴먼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5.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D과 피고 (주)휴먼의 배당금 전액을 삭제하고 그 합계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해 달라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 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61,302,246원(대위변제액 258,995,464원 + 대지급금 1,657,062원 + 미수위약금 649,7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액 258,995,4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9.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연 15%¹⁾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12. 26. 이후인 2015. 1. 19. 피고 A의 대출이자 상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과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던 점, ②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12. 26.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5. 1.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5. 5. 29.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 상환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고, 한편 피고 B와 피고 (주)휴먼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피고 D와 피고 (주)휴먼을 상대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와 (주)휴먼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그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들인 피고 D과 (주)휴먼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B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 D이 체결한 2014. 1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올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4. 11. 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2.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엇보이나, 피고 D이 피고 B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피고 B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변제력을 높였다는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D이 점순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5,000만 원, 피고 (주)휴먼에 576,0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 위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0원으로 고치고, 원고의 배당액을 50,576,014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고 D과 (주)휴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태

판사유지상

판사박소정

별지

1)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음